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9. . . (제 회)	

관 광 진 흥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6.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여행업 규제는 단체관광 중심의 종합여행서비스 규제에 적합하여 최근 관광추세가 개별여행 중심으로 변화하고 단품이나 개인 취향 맞춤형 여행상품 수요가 증가하는 여행시장 환경에 적합하지 않음.

이에 여행환경 변화에 맞추어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 기존 여행업종의 등록요건의 완화, 업종 통합 등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소규모 창업을 촉진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또한 여행업자의 고의적 폐업으로 인한 여행객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여행업 행정처분 기준을 변경하여 등록취소 소요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1).

3. 주요내용

가. 여행업종의 명칭 변경(안 제2조제1항제1호가목)

- 1) 영업범위의 제한이 없이 종합적으로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일반 여행업”의 명칭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여행업”으로 변경함

나. 여행업종의 통합(안 제2조제1항제1호나목)

- 1) 국외 및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여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각각 등록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 2)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하여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함

다. 여행업종 신설(안 제2조제1항제1호라목, 안 별표1)

- 1) 개별여행 추세에 부응하여 개별관광객 맞춤형 여행상품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여행업종을 신설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
- 2) 관광안내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 관광안내업 등록기준을 설정함

라. 여행업의 자본금 등록요건 완화 등 등록기준 변경(안 별표1)

- 1) 개별여행 추세 및 개별관광객 맞춤형 여행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맞춰 틈새시장형 소규모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진입규제 완화 필요
- 2) 종합여행업의 자본금 등록요건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하

마. 여행업 등록취소 행정처분 기준 변경(안 별표2)

- 1) 여행업자의 고의적 폐업으로 인한 여행객의 피해를 막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배상할 수 있도록 등록취소 절차를 단축할 필요
- 2)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록취소 기준을 4회차에서 2회차로 변경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예정

3) 규제심사 : 실시예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하고 “국외를 여행하는”을 “국내외를 여행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관광안내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 안내를 제공하는 여행업(1영업일을 넘어 관광안내를 제공하거나, 운송시설·숙박시설의 이용 알선 또는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2의 개정사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p> <p>1. 여행업의 종류</p> <p>가. <u>일반여행업</u>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p> <p>나. <u>국외여행업</u>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p> <p>다. (생략)</p> <p><신설></p> <p>2. ~ 6. (생략)</p> <p>② (생략)</p>	<p>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 ----- -----.</p> <p>1. -----</p> <p>가. <u>종합여행업</u> ----- ----- ----- -----</p> <p>나. <u>국내외여행업</u> : 국내외를 ----- ----- ----- -----</p> <p>다. (현행과 같음)</p> <p>라. <u>관광안내업</u>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제공하는 여행업(1영업일을 넘어 관광안내를 제공하거나, 운송시설·숙박시설의 이용 알선 또는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2. ~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1. 여행업

가. 종합여행업

-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5천만원 이상일 것
-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내외여행업

-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천만원 이상일 것
-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1,500만원 이상일 것
-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라. 관광안내업

(1) 개인사업자

- (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갖출 것

- (나) 사업장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2) 법인사업자

- (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임원 중 1인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갖출 것

- (나) 자본금 : 1,500만원 이상일 것

- (다)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2. ~ 5. (생략)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제3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생략)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가. ~ 노.(생략) 도.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만 해당한다)	법 제35조 제1항 제20호	시정명령	취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연 락 처	044-203-2840